

#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

-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2024.11.11.(월)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.

## < 공정거래분야 성과 >

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‘공정거래’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.

### 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 강화

먼저, 공정위는 시장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범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·인프라 구축을 통해 ‘공정한 시장경제’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왔다.

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▲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(플랫폼·통신·사교육·의약품·게임 등)와 ▲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(반도체·건설 등) 등에서 총 5,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·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,557억 원을 부과했다. 아울러, ▲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(‘23.1월), ▲공공분야 입찰담합(‘23.6월)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.

#### < 사건처리 세부내역 (‘22.5.10.~‘24.11.5.) >

처리 건수			과징금 부과		고발
총 건수	경고 이상 건수	시정조치 건수	건수	금액	
5,837건	3,076건	574건	289건	11,557억 원	75건

## ②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제고

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했다.

우선, ▲납품단가 연동제 도입('23.7월), ▲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('23.9월~), ▲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('24.2월)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\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\* (하도급)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 : <sup>(21)</sup>57.2%→<sup>(22)</sup>62.8%→<sup>(23)</sup>63%
- 원사업자와의 거래만족도 : <sup>(21)</sup>72.2%→<sup>(22)</sup>73.9%→<sup>(23)</sup>74.6%
- (가맹)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비율 : <sup>(21)</sup>39.7%→<sup>(22)</sup>46.3%→<sup>(23)</sup>38.8%
- (대리점) 거래관행 만족도 : <sup>(22)</sup>90.2%→<sup>(23)</sup>90.3%

또한, 디지털·글로벌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도 빠르게 대응했다. ▲다크패턴 규율(전자상거래법 개정, '24.2월), ▲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('24.3월) 등을 추진했고, ▲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('24.5월), ▲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('24.9월, 약 219억 원), 티몬·위메프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처했다.

## ③ 국민불편·기업부담 규제 개선 및 법집행시스템 개편

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·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법집행시스템도 대폭 개편하였다.

우선, ▲대형마트 및 차량공유·렌터카 영업규제,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\*하여 국민의 쇼핑·이동 편의를 확대하고, ▲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,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(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, '22.12월 및 '24.1월~)했다.

- \*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('23.8월), 주차장법 개정('24.1월), 자동차관리법 개정('24.2월),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중

아울러, ▲정책-조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('23.4월), ▲조사 절차 개선('23.4월)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,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\*되고 사업자들과 국민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.

\* 전년 대비 평균 사건처리 기간 22.2% 단축, 처리 건수 14.6% 증가('23년말 기준)

## < 향후 정책 추진계획 >

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### ① 역동적 시장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

먼저, ▲독과점 플랫폼의 반(反)경쟁행위에 대한 신속·효과적 대응(공정거래법 개정), ▲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, 거래관계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(대규모유통업법 개정)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,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·시정할 것이다.

한편, 인공지능(AI), 기후테크, 문화콘텐츠(웹툰·웹소설 등)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·신(新)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경제규모 성장,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\*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,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.

\* (지정)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(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)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 (CVC) 일반주회사 보유 가능 CVC에 창업기획자 추가 및 외부출자·해외투자 비중 상향 (금융·보험사 의결권) 금융 밀접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 허용,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 명확화

## ②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거래

우선, 민생 밀접분야에서 ▲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, ▲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.

또한, ▲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\*, ▲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\*\* 등을 통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.

\* ▲납품단가 연동제 확산 및 탈법행위 감시, ▲현저한 부당특약의 사법(私法)상 효력 무효화, ▲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금지를 청구하는 '금지청구권' 도입

\*\* ▲필수품목 확대 등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의무화 현장안착 지원, ▲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 시정

아울러, 경제활동의 디지털·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▲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\*, ▲신유형 거래(SNS, 구독 경제,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매 등) 관련 범위반 행위 감시·시정\*\*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.

\* ▲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, ▲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등 (전자상거래법 개정)

\*\* ▲SNS 마켓의 소비자 거래행태 및 법 준수여부 점검, ▲OTT·음원서비스·온라인쇼핑몰의 중도해지권 방해·제한, 게임 아이템 정보 거짓고지 관련 범위반 행위 시정

붙임 :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

담당 부서	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홍형주 (044-200-4300)
		담당자	서기관	김하리 (044-200-4301)

